

법학전문대학원 진로 및 취업지도위원회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)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지도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진로 및 취업지도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위원회는 위원장,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
제3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4조 (위원)

- ① 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원 중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제5조 (간사)

- ① 간사는 본 대학원 행정실장이 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.

제6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본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원 취업정보센터에서 부의하는 사항
3. 본 대학원 학생 취업대책위원회 지도 및 취업률 제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취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7조 (회의)

-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- ② 회의의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 (회의록)

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출석한 각 구성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